

상지대학교 외부인사 포상 지침

제정 2018.05.23.
1차 개정 2020.01.16.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교직원 포상 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외부인사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포상대상자) 상지대학교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학비리 척결, 부정부패 개선 등 대학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단체)
2. 우리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대학발전기금(현물) 또는 외부 재정지원사업 유치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
3. 국내·외 신(편)입생 유치 및 입학자원 확충에 기여한 사람(단체)
4. 우리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단체)
5. 기타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

제3조(포상의 명칭) 포상은 상장과 이에 따른 기념품으로 실시하고, 상장의 명칭은 표창장, 공로상 및 감사장 등 포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상지대학교 교무위원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외부인사 포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본교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나 특별포상이 있었던 경우
2.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기타 포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포상대상자 선정) ① 외부인사 중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상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부총장, 교육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 학생행복처장, 입학홍보처장, 행정지원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고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외부인사 포상에 대한 업무는 기획예산팀에서 담당한다.

③ 포상대상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중복포상의 금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26, 2020.01.16.)

이 지침은 2020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포상대상자 추천서

포 상 대 상 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설립일)	
	소 속		직 위	
추천요지	<개요만 간략하게 서술함>			
공적사항 개 요	<공적사항의 개요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자세한 공적사항은 뒷부분에 기재함>			
기 타 참고사항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개 등>			
위 공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포상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상지대학교총장 귀하				

공 적 사 항